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52
----------	------------

제안년월일 : 2025년 4월 24일

제안자 : 윤영위원장

1. 수정이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의 사용 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경조사 출산 휴가의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 취지를 살리고자 함.

2. 주요내용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의 사용기한을 1년에서 180일로 수정함 (안 별표5 비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9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8조제1항 관련)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9조제1항 관련)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9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자녀	1		자녀	1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일상	본인		20	일상		본인	20	일상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3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본문 중 “제15항에”를 “제16항에”로, “제15항제1호”를 “제16항제1호”로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5의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 2. 11.)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 2. 11.)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9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 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	② -----
하여는 그 출산을 전후하여 90	-----
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 <u>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u>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u>100일, 한</u> -----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	-----
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	-----
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
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	-----
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	-----
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	-----
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	-----
용할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⑬ <u>제15항에</u> 따른 가족돌봄휴가	⑬ <u>제16항에</u> -----
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	-----
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	-----
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5항제1
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
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
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
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
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
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
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
수로 한다.

⑮ (생 략)

-----제16항제1

호-----

-----.

-----.

⑮ (현행과 같음)